

<별첨 2>

수어교육원 이용자격 및 이용료 등에 관한 지침

제정 2021. 01. 01.

개정 2026. 01. 27.

제1조(목적)이 규정은 전라남도수어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운영규정 제4조 [이용대상]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격 및 이용료 등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강좌 이용자격)

- ① 각 과정 수강 신청을 하려면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수강 신청서
 2. 보안 서약서
 3. 수강료 납부
- ② 과정별 수어교육의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본 기관에서 운영되는 과정별 수어교육은 청인을 대상으로 하며 기초반, 중급반, 회화반, 고급반 순으로 상위과정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하위과정의 이수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도민을 우선으로 한다. 단, 신청 인원이 미달 되었을 시 타 지역 희망자가 신청할 수 있다.
- ③ 과정별 수어교육 외 교육(통역사 자격증 대비반, 전문분야별 수어교육,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등)의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사)한국농아인협회 전남협회 산하지회 종사자
 2. 고급반 과정 이수확인이 가능한 전라남도 도민
 3.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도민
 4. 단, 신청 인원이 미달되었을 시 타 지역 희망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3조(강좌 이용제한)

- ① 기간 내에 강좌 신청 서류 미제출 및 이용료를 미납한 사람
- ② 과정별 수어교육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이용제한을 둘 수 있다.

1. 본 기관에서 요구한 하위과정 이수확인이 불가한 사람
 2. 당해연도에 동일한 과정을 3회 이상 신청했을 시
 3.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강사로부터 이용제한을 요구받은 경우
 - 가. 교육 진행을 반복적으로 지연 시키는 사람
 - 나. 강사에게 무례한 언사를 행하는 사람
 - 다. 불성실한 태도로 다른 수강생 교육에 방해가 되는 사람
 - 라. 비대면 교육 시 반복된 강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비디오 사용을 중지한 사람
 4. 보안서약을 한 강좌 신청자의 각 호의 사항의 위반사항이 확인될 시 이용제한 및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산업발전법 제 19조, 제 22조에 의거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가. 본 교육원에서 시행되는 대면 교육 및 동영상 강의를 불법 녹화, 복제하여 판매하거나 유무상으로 공유하는 행위
 - 나. 강의 자료를 무단 복사, 복제, 배포하는 행위
- ③ 본 기관에서 운영되는 과정별 수어교육 외 모든 교육의 이용제한은 제3조(강좌 이용제한) 2항 3호와 같이 한다.

제4조(이용료)

- ① 각 과정별 수어교육의 이용료는 다음과 같다.
1. 과정별 수어교육의 수강료는 교재비 포함하여 기초,중급과정은 이만원(₩20,000)이며 회화,고급과정은 삼만원(₩30,000)이다.
 2. 전문분야 수어교육 및 그 외 수어교육의 수강료는 강의주제와 시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
 3. 한국수어교원양성과정의 수강료는 다음과 같다. 단, 기관의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가. 전라남도협회 임직원과 전라남도민은 삼십만원(₩300,000)이며 교재비를 포함한다.
 - 나. 타지역 거주자는 사십만원(₩400,000)이며 교재비를 포함한다.
- ② 이용료는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하며 내부논의에 따른다.

제5조(환불규정)

- ① 교육원은 수강생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비 반환 등의 조치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
1. 수어교육과정이 폐쇄 된 경우는 전액 환불한다.
 2. 교육과정 시작 전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단, 전문분야 수어교육 제외)

② 환불규정은 [별표 1]에 따른다.

제6조(수료증 발급기준)

① 수료증 또는 이수증 발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과정별 수어교육은 70% 이상 출석한 사람
2. 전문분야 수어교육은 강좌에 따라 이수자격을 충족한 사람
3. 한국수어교원양성과정은 12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제7조(한국수어교원양성과정 실습)

①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운영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현장 실습 기관 섭외 및 업무 협약 체결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교육원”내에서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실습을 진행하도록 한다.
2. 교육실습에 대한 규정은 [별표 2]에 따른다.

제8조(기타사항) 위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협회의 통상적인 것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 회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며 부분 개정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며 차후 이사회에 보고한다.

<별표 1>

전라남도수어교육원 수강료 환불규정

강좌별	환 불 기 준		비 고
과정별 수어교육	○수업개시 전	- 수업개시 일주일전까지 전액 환불	
	○수업개시 후	- 환불 불가	
전문분야 수어교육	○수업개시 전	- 환불 불가	
	○수업개시 후	- 환불 불가	
한국수어교원양성과정	○수업개시 전	- 수업개시 30일 전까지 전액 환불 - 수업개시 30일 이내 50% 환불	
	○수업개시 후	- 환불 불가	

수어교실 수강신청서

신청일 : 202 . . .

※ 필수 희망하는 강좌 (시간 ○ 체크)	예)기초반(화·목)	오전반 10:00~11:30 () 저녁반 19:00~20:30 ()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휴대전화		
접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서를 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세요.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 이메일 jndeaf2020@daum.net / FAX 061) 272-2265 홈페이지 http://www.jnksl.kr 	
입금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강료입금계좌 : 농협 351-1129-8316-33 (한국농아인협회전남협회) 입금 시 「이름+신청반」으로 이체해주세요. (예: 000중급) 반드시 수강생 본인 이름으로 입금해주세요. 	
문의처	☎ 061) 272-2165 / 전남 목포시 원형서로 46-1 212호(양우비치팔레스 상가)	

개인정보 및 사진 활용 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 : 중앙회, 주무관청, 유관기관 등과 관련된 사업, 기타 제반 업무 등에 필요한 서류 제공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보유 및 이용기간 : 제공된 날로부터 목적 달성 이후 3~5년 또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 준 영구적으로 보존 교육 중에 촬영된 사진을 홈페이지 게시 및 사업홍보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 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강 신청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p>
-----------------------------------	--

※신청 및 환불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00월 00일까지 미납시 신청 자동 취소됩니다. 타행 이체시 이체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환불해 드립니다. 수강료 환불은 <u>개강 하루 전까지 환불신청서</u>를 제출한 자에 한합니다.
-----------------------------	--

※ 내부사정에 따라 수업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사)한국농아인협회전라남도협회 전남수어교육원

2000년 제0기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신청서

성명		생년월일	
E-mail		연락처	
주소			
소속	(수어통역센터), (기타 :)		
신청경로	<input type="checkbox"/> 본인희망 <input type="checkbox"/> 주위권유 <input type="checkbox"/> 홍보물 <input type="checkbox"/> 홈페이지 <input type="checkbox"/> S N S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작성한 이메일과 연락처를 통해 교육관련 추가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취급 및 사진 활용 동의 안내]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2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의거, 신청서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데 동의하고, 교육 중 촬영된 사진을 활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상기와 같이 제0기 한국수어교원양성과정을 신청합니다.

2000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전라남도수어교육원 귀중

- ▶ 접수 : 팩스 061-272-2265 / 전자우편 jndeaf2020@daum.net
- ▶ 문의 : 영상전화 070-7947-6335/ 전화 061-272-2165
- ▶ 수강료 : 전남도민 30만원 / 그 외 지역 40만원
- ▶ 입금계좌 : 농협 351-1129-8316-33 (예금주 : 한국농아인협회 전라남도협회)
- ▶ 환불규정 : 개강 30일전 전액 환불, 개강 전 30일내 50% 환불, 개강 후 환불불가

보안 서약서

상기 본인은 전라남도수어교육원에서 시행하는 교육 관련 정보들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숙지함과 더불어 본 서약서에 보안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교육 및 사업 참여 기간뿐만 아니라 수료 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인식하고 서명합니다.

가. 전라남도수어교육원에서 시행되는 대면 교육 및 동영상 강의를 불법 녹화,복제하여 판매하거나 유무상으로 공유하고자 하는 행위

1. 강의를 무단으로 녹화,복제하는 행위
2. 무단 복제하거나 촬영한 동영상을 수강생 및 제 3자 간에 유상 혹은 무상으로 판매하거나 공유하는 행위
3. 무단 복제하거나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 커뮤니티나 사이트에 올리는 행위

기관의 허락이 없이 콘텐츠를 무단 공유하거나 판매하는 건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등 관련 법에 의하여 민사손해배상 청구가 진행됩니다.

[저작권법 개정안 제136조(권리의 침해죄)] 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나. 강의 자료를 허락 없이 무단 복사,복제,배포하는 행위

1. 기관의 사전 허락이 없는 것은 모두 불법임.
2. 강사님들의 강의는 무단으로 공유하거나 일부 혹은 전부를 서면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상업적 혹은 무상으로 유통시킬 경우에는 관련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으실 수 있음.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산업발전법 제22조]

온라인 콘텐츠 제작자는 침해자에 대하여 침해 행위의 중지나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제19조)**

온라인 콘텐츠제작자의 영업상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22조)**

본인은 위의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만일 위 사항을 위반 시 명시되어 있는 법에 의한 모든 책임과 제 법규에 따른 민·형사상의 모든 처벌을 감수할 것이며 전라남도수어교육원에 끼친 손해에 대해 책임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인 : (인 또는 서명)

수강료 환불 신청서

● 해당란에 기입해 주십시오.

신청자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신청교육명		입금자명	
	입금일		입금금액	
환불요청사유				
환불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개인정보 취급 동의 안내]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2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의거, 신청서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데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농협 외) 타행 이체시 이체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환불해 드립니다.
- 환불 기한은 3일~5일 이내입니다.

상기와 같이 수강료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전라남도수어교육원 귀중

현장 실습 협약서

한국농아인협회 전남협회 전라남도수어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소속 교육생(이하 "실습생"이라 한다)의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고, 한국수어 교육 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 지식과 경험 습득을 위해 현장 실습(이하 "현장 실습"이라 한다) 운영과 관련된 지침을 준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현장 실습 운영 기준)

- ① 현장 실습은 최소 1주간, 1일(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② 현장 실습은 통상 근로 시간 내 운영하되, 현장 실습 기관의 특성 및 "실습생"의 상황(직장인 등)을 고려하여 야간 및 주말 시간을 이용한 현장 실습도 운영할 수 있다.

제2조 ("교육원"의 현장 실습 운영)

- ① "교육원"은 현장 실습이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양하고 폭넓은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최선의 기회를 제공한다.
- ② "교육원"은 현장 실습을 지도한 담당자를 배치하여 "실습생"이 성실히 현장 실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실습생"에 대한 출결 관리 및 평가를 실시한다.
- ③ "교육원"은 현장 실습 운영 계획 및 일정 수립 후 "실습생"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한다.
- ④ "교육원"은 현장 실습 운영에 필요한 모집 인원, 실습 기간 등의 신청서를 접수, 검토 후 실습생 지원 및 모집에 관한 업무를 실시한다.
- ⑤ "교육원"은 "실습생" 선발에 필요한 관련 서류(이력서 등)를 받아들 수 있다.
- ⑥ "교육원"은 선발된 "실습생"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을 실시한다.
 1. "실습생"은 실습 기간 동안 주어진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한다.
 2. "실습생"은 실습 기간 동안 "교육원"의 규정 등 제반 수칙을 준수한다.
 3. "실습생"은 실습을 위한 장비 등이 파손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실습생"은 실습 과정에서 알게 된 "교육원"의 기밀 사항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 ⑦ "교육원"은 현장 실습 중 "실습생"의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 ⑧ "교육원"은 현장 실습 관련 규정에 따라 현장 실습 종료 후 "실습생"의 제출 서류 검토 후 실습생에 대한 학점(시간) 인정 절차를 실시한다.

제3조 (현장 실습 시간 및 장소)

- ① 실습 시간은 "교육원"의 근로 시간을 기준하여 1일 4시간 실습하는 것을 권장하되, 식사 시간은 총 실습 시간에서 제외한다.
- ② 실습 장소는 "교육원"의 사업장 또 사업과 관련된 장소로 하고, "실습생"의 보건·위생 및 산

